

##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 - 1
------------	-------------

발의년월일 : 2005. 3.

발 의 자 : 151 의원 외 3 명

### 1. 수 정 이 유

- 축산농가의 축산업 등록제가 도입되어 2005. 12. 26까지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2007. 1. 1부터는 적정두수 이상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 2007. 1. 1. 이후에는 축종별 사육두수에 맞게 축사를 조정하여야 함으로 축사 면적 확대가 불가피함.
- 따라서 현행 건폐율을 적용할 경우 많은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영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축사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하되, 축사의 경우에는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규정  
(안 제40조 제17호, 제18호, 제20호)

###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0조제17호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며, 동조제18호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0호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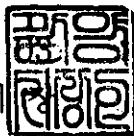
조례안	수정안
제40조 (생략)	제40조 (개정안과 같음)
1. ~16. (생략)	1. ~16. (개정안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 : (생략) (축사는 <u>40퍼센트</u>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개정안과 같음) (축사는 <u>60퍼센트</u>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생략) (축사는 <u>40퍼센트</u>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개정안과 같음) (축사는 <u>60퍼센트</u> 이하)
19. (생략)	19. (개정안과 같음)
20. 농립지역 : (생략) (축사는 <u>40퍼센트</u> 이하)	20. 농립지역 : (개정안과 같음) (축사는 <u>60퍼센트</u> 이하)
21. (생략)	21. (개정안과 같음)

##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9
----------	------

제출년월일 : 2005.

제출자 : 광양시



### 1. 개정이유

- 상급관청으로부터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에 대하여 따르고자 하며
- 법령의 띄어쓰기 정책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시 함께 정비코자 함.

### 2. 주요개정내용

-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종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에 대한 조사산출방법 및 경사도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거나 기준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의 감사처분요구사항 이행.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중 경사도 조사방법 신설 : 안 제17조, 별표1의2
- 농림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폐율 상향 조정정책” 반영.
  - 보전·생산·농림지역안에서 축사의 건폐율 상향 조정 : 안 제4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반영.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완화 : 안 별표 20
- 법제처가 2005년 1월 1일부터 추진 중인 법률 한글화 추진사업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반영.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71조·제8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5. 관계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시보 및 시홈페이지 입법예고기간(2005. 03. 09 ~ 03. 15)

8. 사전협의(승인)사항 : 국립국어연구원 검토 필.

9. 조례규칙심의회 : 2005. 03. 16(원안가결)

10. 기타 참고사항

-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공문서 사본
  - 지역 58540-1819(2003. 7. 22)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송부”
  - 지역계획과-11022(2004. 12. 2)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 등 추진 협조요청”
  - 지역계획과-959(2004. 2.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통보”
- 전라남도(법무담당관실)로부터 시달된 공문에 의거 자체 공문 사본
  - 기획감사담당관실-101(2005. 1. 11)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

##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도시계획조례”를 “광양시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0조증 “영 제84조제1항의”를 “영 제84조의”로 하고 동조제17호·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축사는 4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축사는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축사는 40퍼센트 이하)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 차목 중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이상인 것과”를 “이상인 것과 시장이”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9조 중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고,

제11조·제14조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고,  
 제19조 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5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림법시행규칙”을 “「산림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1조·제46조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8조 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재개발법」”으로 하고,  
 제49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61조 중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광양시도시계획조례”를 “「광양시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광양시준농립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광양시 준농립지역 안에서의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광양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를  
 “「광양시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부칙 제5조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각각 “「광양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표2·별표3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4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9·별표10·별표11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별표12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별표13·별표14·별표15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16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별표17**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별표18**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19**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별표20**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21**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22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23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별표24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의2]

## [별표1의2] 경사도 조사방법(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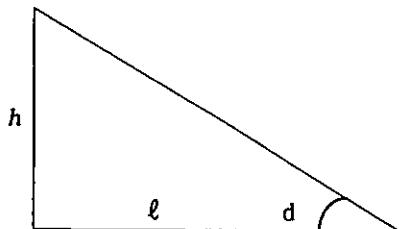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 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 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 2. 경사도 측정방법

## 가. 일반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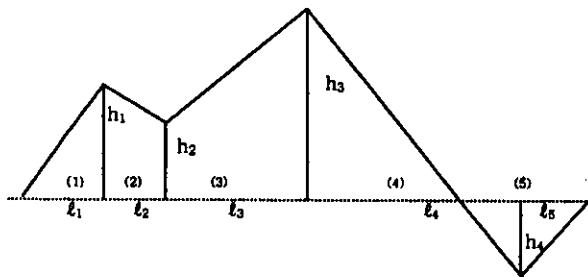


$$\text{경사도 } d = \tan^{-1}\left(\frac{h}{\ell}\right)$$

##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 [산정예]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 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l_1$	$h_1$	$d_1 = \tan^{-1} \frac{h_1}{l_1}$	$d_1 l_1$
(2)	$l_2$	$h_1 - h_2$	$d_2 = \tan^{-1} \frac{h_1 - h_2}{l_2}$	$d_2 l_2$
(3)	$l_3$	$h_3 - h_2$	$d_3 = \tan^{-1} \frac{h_3 - h_2}{l_3}$	$d_3 l_3$
(4)	$l_4$	$h_3 + h_4$	$d_4 = \tan^{-1} \frac{h_3 + h_4}{l_4}$	$d_4 l_4$
(5)	$l_5$	$h$	$d_5 = \tan^{-1} \frac{h_4}{l_5}$	$d_5 l_5$

$$\text{전체 경사도 } d = \frac{d_1 l_1 + d_2 l_2 + d_3 l_3 + d_4 l_4 + d_5 l_5}{l_1 + l_2 + l_3 + l_4 + l_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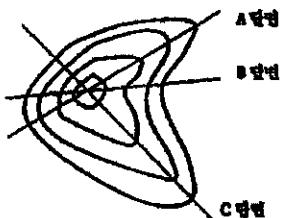
$$= \frac{\sum d_i l_i}{\sum l_i}$$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나)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중 최대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경사도

$$d_A = \frac{\sum d_{Ai} l_{Ai}}{\sum l_{Ai}}$$

B단면 경사도

$$d_B = \frac{\sum d_{Bi} l_{Bi}}{\sum l_{Bi}}$$

$d_{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_{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_{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_{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text{Max}(d_A, d_B, d_C, \dots)$

## 신 · 구조문 대비표

